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□ 변경 사항: ①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(윤상민)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5. 7. 10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5. 30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5. 31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 전문 인력]	최근 기준으로 기재 부책임운용역 삭제	- <u>윤상민</u>	<u>2025. 5. 31. 기준</u> <u><삭 제>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 부책임운용역 삭제	- <u>윤상민</u>	<u>2025. 5. 31. 기준</u> <u><삭 제>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 근 변경 내역	모투자신탁의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삭제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 근 변경 내역] -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<u>부책임운용역 : 윤상민</u> <u>(2024.09.27~현재)</u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 근 변경 내역] -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 <u>부책임운용역 : 윤상민</u> <u>(2024.9.27 ~ 2025.07.09)</u>
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5. 30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나. 과세		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〈신 설〉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	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<u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--------------	--	---	--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5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 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26기(2023.12.31)</u> <u>제25기(2022.12.31)</u>	<u>제27기(2024.12.31)</u> <u>제26기(2023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5. 5. 31. 기준</u>